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715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9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김문수 · 박용갑
장철민 · 이재강 · 이광희
박지원 · 민홍철 · 백승아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.

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설)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 및 처리하거나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,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등의 인적사항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)

2.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, 회복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
2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
3.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
4.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12조의2(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</u></p> <p><u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 및 처리하거나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,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 등의 인적사항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</u></p> |

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)

2.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, 회복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

2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

3.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

4.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

처리하는 정보시스템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